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지부교섭 속보

5호

2024.05.17(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5차 지부교섭_ 질의응답 ③ :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금속산업최저임금,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제 성의있는 제시안이 나와야한다!



이 정도면 질의응답 충분하다

5월 16일(목) 코스모링크에서 열린 5차 지부교섭에서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만 세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사측 교섭위원들은 26개의 질문을 쏟아냈다. 예년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질문이다. 사측이 이 정도로 정성껏 질문을 준비했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성의있는 제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원청의 책임 강화는 사회적 흐름

지부는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를 위해 차별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계약상에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사측은 그럴 경우 하청업체의 자율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그런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다. 하청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게 하려면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작년에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도 원청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차기교섭부터는 성의있는 제시안 나와야

질의응답은 끝났다. 3차례에 걸쳐 26개의 질문이 나왔다면 사측이 그만큼 요구안에 대해 꼼꼼히 검토했다는 뜻일 것이다. 오랜 시간 충분히 검토한만큼 이제는 사측의 성의있는 제시안이 나와야 할 때다.

* 차기교섭 : 5/23(목) 14:30 한국KDK

5차 교섭 속기록

질의응답 길었던 만큼 충실한 제시안 기대하겠다

사 : 세계적으로 유가, 주요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안 내려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알차게 잘 협의해서 빨리 조속히 협의를 완료되면 좋겠다.

노 : OECD 경제전망은 회복세로 보고 전년보다 높게 전망하고 물가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 중앙교섭에 사측 교섭위원들이 많이 참석 못해서 간신히 성원이 됐다. 당연히 제시안 제출도 없었다. 성원 구성도 힘든 상황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해 이해할 만한 제시안이 준비될까 걱정됐다. 지부교섭은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오늘 3차 질의응답인데 평년보다 많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차기교섭에서는 오랜시간 고민한 만큼 고민 흔적이 보이는 성의있는 제시안 준비해달라.

Q1.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내용을 도급계약에 명시하는건 자율경영권 침해로 보일 수도 있다.

: 실질적 권한은 원청사용자에게 있다. 원청이 책임을 다 하려면 도급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Q2. 위 내용을 강제로 할 권한은 없는 걸로 안다.

: 법적 처벌은 없다. 그래서 교섭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되고 있고, 사회적 흐름은 그렇게 갈 것이다.

Q3.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중 숙식비 공제는 내국인과 차별 금하라는 뜻인가?

: 기존 조합원들도 기숙사비나 식사비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가장 열악한 처우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 정도의 추가 복지를 제공하는 게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

Q4.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작년 지부교섭에서 단서조항 삽입해서 어렵게 합의했는데, 바로 올해 교섭에서 단서조항 삭제하자고 요구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회사도 있다.

: 작년에 합의한 것을 곧바로 개정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작년 지부교섭 합의안이 단서조항 때문에 승인을 못했을 상황이었다. 단서조항을 올해 교섭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승인을 얻었다. 지혜를 모으면 해결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Q5. 매월 안전점검 하면 개선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분기, 반기, 연단위로 가능한가?

: 지적사항이 많아지면 개선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점검기간이 짧은지 긴지에 따라 개선계획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사업장에 따라 공정별로 할지 전체를 할지는 노사간 협의하면 된다. 매월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이해하면 된다.

Q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과 예산에 대해 법적 기준이 명확치 않다. 노사가 같이 평가하자고 했는데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 노사합동점검이든 위험성평가가든 개선계획을 낼 때 사업장 마다 예산 문제를 많이 언급한다. 단기, 중장기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회사에게 더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개선계획 내용이 예산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위험요소 확인에 현장 조합원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도 시간, 예산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Q7. 법정교육, 의무사항 점검은 보통 산보위 안전으로 다룬다. 합동점검 방법을 생각한 바 있는지?

: 법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교육 등 의무사항이 누락되고 있다. 휴가자나 결원자, 일부 공정이 누락되기도 한다. 그러면 사전 예방하기 어렵다. 그런걸 합동으로 하자는 것이다.